

- 비고 : 도로확장 편입부분 해제
 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731-6346~9),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860-2384~6), 마포구청 도시개발과(☎ 330-2385~9),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920-4385~7) 및 각 구청 지적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1999-243호

한강밤섬생태계보전지역지정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자

연환경보전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밤섬을 서울특별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 8. 10

서울특별시장

가. 위치

- 윗밤섬 : 영등포구 여의도동 84-8일대
- 아랫밤섬 : 마포구 당인동 313일대
 - 구역 : 위번지 일대의 아래 좌표내 구역

번호	Y	X	번호	Y	X	번호	Y	X
1	448707	193102	8	448631	193710	15	448222	193903
2	448752	193152	9	448606	193761	16	448353	193645
3	448778	193298	10	448543	193889	17	448429	193569
4	448793	193475	11	448467	194044	18	448495	193555
5	448723	193588	12	448329	194143	19	448521	193495
6	448642	193632	13	448253	194149	20	448561	193340
7	448625	193654	14	448170	194104	21	448630	193156

비고 : 좌표 판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영원점 : 중부원점 (동경127도, 북위38도)
2. 도법 : 직각좌표 (TM : Transverse Mercator)
3. 독취지형도 : 축척 1/1,000, 도엽명 : 서울

나. 면적 : 241,490㎡

다. 지정의 필요성

밤섬은 수생 및 육상생물의 서식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보기드문 도심의 철새 도래지로써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임

라. 금지행위 및 출입제한

(1) 금지되는 행위

- 생태계보전지역내의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및 덫, 올무 그물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하는 행위
- 생태계보전지역내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2) 출입의 제한 및 예외

- 원칙적으로 출입은 제한하되,
-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생태계의 보전·복원행위·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지조사 등은 예외로 함.

마. 위반시 과태료부과

- 금지 행위를 위반한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출입제한을 위반한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바. 관리기관 : 한강관리사업소

사. 기타 한강밤섬의 생태계보전지역지

정고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환경기획과(전화 : 3707-9517~8) 및 한강관리사업소(전화 : 791-0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1999-247호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9. 8. 10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세부시설 변경 결정 조서

- 구분 : 폐지
- 시설명 : 시장
- 시설의 세분 : 소매시장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828-10
- 면적 (㎡)
 - 기정 : 3,322.1
 - 변경 : 감)3,322.1
 - 변경후 : 0

나.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다.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전화 : 731-6346) 및 강남구 도시환경과(전화 : 510-138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1999-24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1997-22호(97.3.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66호

(97.12.1)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와 같은고시 제1998-279호(98.8.10)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봉천지구~낙성대길간 연결도로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999. 8. 10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1) 봉천7-1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 관악구 봉천동 산32-1~244-7
- (2) 봉천택지개발지구 진입로 : 관악구 봉천동 산29-1~산35-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2) 사업의 명칭 : 봉천지구 ~ 낙성대길간 연결도로공사

다. 사업의 규모

- (1) 봉천7-1주거환경개선지구 진입로 : 폭 10M, 연장 344M
- (2) 봉천택지개발지구 진입로 : 폭 10M, 연장 315M(터널 110M 포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2) 성명 : 서울특별시 고 건(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대행)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년(1997.12.1 ~ 1999.11.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항(변경분)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변경없음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분)